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엘리베이터TV" 설치 계약서

씨티극동아파트(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FMK"라 한다)는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FMK"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FMK"의 엘리베이터TV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사간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 ① "서비스"는 "계약자"의 엘리베이터 내부의 설치공간 또는 대기공간에 엘리베이터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광고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FMK"는 "계약자"가 "서비스"를 통해 "계약자"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솔루션을 제공한다.
- ③ 광고 콘텐츠 등의 선정, 광고 콘텐츠 등과 "계약자"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지 등의 노출위치 등 "서비스" 운영 제반 사항은 "FMK"의 정책에 의한다.
- ④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광고 수익 등 일체의 수익은 "FMK"에 귀속된다.

제3조 [설비의 공급 및 설치]

① "FMK"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엘리베이터TV를 비롯한 통신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며, "계약자"는 "FMK"가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편익(전기 제공, 엘리베이터 내 설치 장소 제공, "FMK"의 출입 보장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FMK"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설비"를 설치한다.

"설비" 세부내역 : 세로형 엘리베이터TV : 25"형 16 대

설치장소 및 위치 : ["계약자"와 협의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총 16 기, 출입문 쪽 좌측 정면]

③ "설비" 설치 완료 후 "계약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자의 검수를 거친 후 "FMK"에게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④ "계약자"는 "설비"의 소유권이 "FMK"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

무로써 사용, 관리해야 하며, "FMK"의 귀책사유 없이 "설비"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에 따른 변상의 책임 부분은 양 당사자간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계약자"는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원인불명의 경우 "FMK"에서 무상보수 한다.

⑤ "FMK"는 원격 관제로 "서비스"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⑥ 엘리베이터 수리 및 리모델링 등에 따른 상호 일정 부분을 별도 합의하고, 철거 이후 엘리베이터 내 "설비"를 재설치 하는 경우 철거 비용 부담 주체는 "FMK"이며, 재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측에서 부담한다.

제4조 [사용대가]

① "FMK"는 "계약자"로부터 제3조 제1항의 편익을 제공받는 대가(이하 "사용대가"라 한다)로 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원활한 사용대가 지급을 위해 계약자는 지급월 15일까지 "FMK"로 해당 금액을 세금계산서 청구 완료한다. 단, "계약자"측의 증빙할 수 있는 사유(비영리법인 등)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FMK"에서 입금확인 관련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한다.

*계약반기액: 금 사백이십사만삼천이백 원 (4,243,200 원/부가세, 전기료포함)

*계약연금액: 금 팔백사십팔만육천사백 원 (8,486,400 원/부가세, 전기료포함)

*계약기준 및 지급방식: 계약시작일을 기산일로 익월말 이내 지급 / 반기납

② "계약자"의 귀책 사유를 원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FMK"의 광고 콘텐츠 노출 부분의 훼손, 노출 부분에 광고물 부착, "계약자"의 사유로 인한 단전 및 계약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FMK"가 본 계약 상 해지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 등)한 경우 "계약자"는 "FMK"로부터 수령한 "사용대가"에서 해당일자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FMK"에 반환해야 한다. 단, 매년 누적하여 5일 이내 까지는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

③ 계약시작일 이후 "계약자"의 귀책사유(설치거부,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한 설치지연 등)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될 경우 1항의 사용대가는 해당 일자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단, 15일 이내 설치될 경우 "FMK"는 "계약자"에게 사용대가를 정상 지급한다.

제5조 [유지보수]

① "FMK"는 설치확인서 수령 이후부터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설비"에 대한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보수한다.

1. "FMK"의 보수요원 이외의 자가 "설비"를 개조하거나 보수 등을 행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2. "설비"의 사용법에 위배되는 사용으로 인한 하자
 3. "FMK" 또는 "FMK" 보수요원이 "계약자"가 요구하는 "설비"의 개조 등이 부적합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설비를 개조하여 발생한 하자
 4.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 ② "설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FMK"또는 "FMK"의 보수요원에게 "설비"의 점검 및 시험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6조 [상호협조]

- ① "계약자"와 "FMK"는 신의성실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계약자"와 "FMK"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견이 다른 경우 즉시 정보 교환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필요 시 별도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③ "계약자"가 위탁관리회사인 경우, 계약기간 중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될 시 계약자는 변경 당월 말 일내에 "FMK"에 통보 및 위탁관리회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 ① 양 당사자는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본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당사자는 최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이나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3. 회생 또는 파산, 회사정리 등 도산절차를 개시한 경우
 4.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때
 5.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6.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
- ② 양 당사자는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설비 철거 등]

- ① "FMK"는 본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비"를 철거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 내의 천공부분은 알루미늄 명판이나 아크릴 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고 견고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확인 후 철거확인서를 "FMK"에 교부하고, 이 때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② "계약자" 측의 사정으로 제품변경 및 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FMK" 비용 기준에 따라 "계약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9조 [안전의무 등]

- ① "FMK"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계약자"측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②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비스"가 엘리베이터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FMK"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FMK"는 "설비"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설비"를 원인으로 엘리베이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FMK" 외 "계약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 ④ "FMK"는 전자파적합(EMS) 시험에 합격한 제품만을 "설비"에 이용해야 하며,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한다.

제10조 [타 사업자와의 계약 금지]

"계약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서비스"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 "FMK"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3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 2024년 3월 16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제12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FMK”와 “계약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계약하면서 각각 기명 날인하여 정본 1부씩을 보관한다.

2024년 03 월 13일

“FMK”

사업자명: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45F

사업자 번호 : 726-88-00639

대표이사 : 윤 제 현



“계약자”

사업자명 : 씨티극동아파트

주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09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09번지
씨티극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리장 김익현 (인)
관리소장 : 박희재 (인)

124-041 송파구 풍납동 509번지
풍납씨티극동아파트관리사무소

